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가단1010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32384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가단101059 판결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

피 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락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D와 B 사이에 2017. 1. 5.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E와 B 사이에 2019. 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는 B에 대하여 8,400만 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B의 자녀들이다.

나. F의 B에 대한 채권 발생

1)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7.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B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회사의 위 채무를 8,400만 원의 한도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06. 12. 6. H유한회사에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고, H유한회사는 2009. 4. 30.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위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3) I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00107호로 소외 회사 및 B 등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2. I에 소외 회사는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B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8,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F는 I의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 양수하고, 2016. 10. 11.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양도인	양수인	채권양도일
I	J 주식회사	2010. 10. 20.
J 주식회사	K 유한회사	2012. 10. 17.
K 유한회사	L 주식회사	2016. 5. 19.
L 주식회사	F	2016. 7. 13.

다. 피고들의 재산 취득 등

- 1) B 소유이던 포항시 북구 M,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Q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7. 1. 5.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으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R으로부터 189,634,730원을 송금받아 이를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다.
- 2) 피고 E은 2019. 2. 1. S 주식회사로부터 85,936,314원을 송금받았다.

라. B에 대한 파산선고 등

B는 2021. 9. 30. 대구지방법원 2021하단3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R과 S 주식회사는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 D가 2017. 1. 5. 주식회사 R으로부터 189,634,730원을 송금받은

것과 피고 E이 2019. 2. 1. S 주식회사로부터 85,936,314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상 피고들이 B로부터 위 각 돈을 증여받은 것이고 이는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돈 중 F의 채권액 한도 내인 각 8,4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다른 원인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툼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아닌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그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 D가 2017. 1. 5. 주식회사 R으로부터 189,634,730원을, 피고 E이 2019. 2. 1. S 주식회사로부터 85,936,314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S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B가 운영하는 회사인 사실과 피고 E이 2017. 3. 18.부터 2018. 2. 1.까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 2020. 3. 18.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회사가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은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위 각 돈이 사실상 B 소유의 재산이라는 점 및 위 각 돈의 송금행위가 증여라거나 그 밖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람